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4. 2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15.

다. 상정일자: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6. 4. 22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보육정책과장 정명옥】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「마포구 보육 조례」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(안 제2조)
-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(안 제13조)
-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조정(안 제22조)

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
  - 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7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) 및 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
  - 3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(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 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 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, 같은 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구립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또한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(1)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라 정의 규정 정비(안 제2조)

-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<u>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</u></p> <p><u>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.</u></p> <p><u>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<u>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집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6. 삭 제

(2)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(안 제13조)
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, 5·18 민주유공자, 의사상자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병역명문가 등 추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<u>수급자</u>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</p>	<p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수급자 또는 그 가족</u>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/p>

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
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1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
<p>4. (생략)</p> <p>5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⑥ (생략)</p>	<p>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)</p> <p>11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12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 제5조-----</p> <p>13. 「<u>다문화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다문화가족</p> <p>14.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(3)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(안 제22조)

○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규정 정비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위탁기간)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단,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<u>3년 이상 5년 이내</u>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<u>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</u></p>	<p>제22조(위탁기간) ①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</u>----- ----- <u>그 남은 임기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-----</p>

<p><u>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</u>  <u>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</u>  <u>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</u>  <u>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</u>  <u>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</u>  <u>있다.</u></p>	<p>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재위탁할 수 있  <u>다.</u></p>
--	--

(4) 기타 정비

-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 
(안 제15조, 안 제18조, 안 제28조, 안 제35조, 안 제40조)
-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간소화  
(안 제20조, 안 제21조)
- 자치법규에 맞는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
(안 제7조, 안 제10조, 안 제18조, 안 제40조)

다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향후 이용료 감면 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적 영향 및 시설 운영 부담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가 변경됨<sup>1)</sup>에 따라 동일 용어를 사용하는 타 조례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고, 관련 부서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**< 개정 대상 조례 목록 예시 >**

연번	대상 조례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	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
2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제9조(이용료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 3.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	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가 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에서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변경되었음.  
- 이는 같은 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, 실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 보육서비스가 초등학교 취학 전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  
-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연령과 법령상 정의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.

**□ 「영유아보육법」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〈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, 2023. 8. 8., 2024. 2. 6.〉
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**□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**

제7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)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〈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4., 2019. 6. 4., 2024. 7. 9.〉

1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1의2.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
2.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

3의2. 삭제 <2015. 9. 15.>

4.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2. 6. 29., 2013. 12. 4., 2024. 6. 25.>

1. 삭제 <2012. 6. 29.>

2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

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
5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
6.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
7. 삭제 <2015. 9. 15.>

8. 삭제 <2012. 6. 29.>

9.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**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